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오납 통행료의 환불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4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4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과오납 통행료의 환불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안 제21조 의3제1항 및 제2항).	3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221924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15.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이하 “유료도로관리청 등”이라 한다)는 통행료 감면, 미납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자의 이름, 차량 정보 등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과오납된 통행료를 환불하는 업무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료도로관리청 등은 환불 소요가 발생하더라도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환불 대상자에게 즉시 환불 안내 고지가 불가하며, 환불 대상자가 유료도로관리청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만 환불 처리가 가능한 실정임.

한편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포함되나, 하나의 법인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할 수 있어 법인등록번호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법인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과오납 통행료의 환불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 업무 수행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의 환불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	② ----- -----

현행	개정안
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u>수납</u> 또는 <u>강제징수</u>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u>통행한</u>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주민등록번호, <u>법인등록번호</u>,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생략) ③ (생략)	----- ----- <u>수납, 강제징수 또는 환불</u>----- ----- -- <u>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환불의 경우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납부한</u>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u>-----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21조의3제1항¹⁾은 통행료 감면,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1)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수납·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부과·수납·강제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오납된 통행료 등의 환불업무 수행 시에는 정보제공 요청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²⁾을 근거로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등으로 수납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환불, 알림톡 및 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재정고속도로의 과오납 통행료는 65,406건, 211백만원으로 이 중 58,077건(88.8%), 193백만원(91.5%)을 환불하였음 (참고 2 참조).

반면,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민자도로 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불 안내 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환불 대상자가 민자도로 관리권자 등에 직접 환불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 처리를 하고 있음.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과오납 통행료를 별도로 관리하는 8개 민자고속도로를 조사한 결과 과오납 건수 중 환불된 비율은 19.1%, 금액 기준으로는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과오납된 통행료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수납된 금액으로서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이를 신속하게 반환할 필요가 있고, 환불여부가 이용자의 과오납 인지 및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과오납된 통행료 등의 반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하나의 법인이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³⁾ 법인등록번호만으로 환불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불 대상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⁴⁾

3) 법인등록번호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대법원에서 부여하는 번호로 법인별로 1개가 부여되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시 부여되는 번호로, 하나의 법인이라도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수 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유료도로법」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청)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만 요청할 수 있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와 차량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차량의 압류사항에 관한 정보
5.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에 추가할 필요성도 인정됨.

다만, 개정안의 체계·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과오납된 통행료 또는 부가통행료를 돌려주는 것을 ‘환불’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70조⁵⁾에서 과오납된 점용료를 돌려주는 경우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도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대부분 ‘반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용어의 통일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환불’을 ‘반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1조의3제2항제4호는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면서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각각 별개의 근거에 따라 부여되는 서로 다른 번호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별도로 병렬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5) 「도로법」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의견

과오납된 통행료의 환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재산권 보호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1

민자고속도로 과오납 통행료 조사('25.3월)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노선별 과오납 통행료 발생 사유 및 규모
- (조사범위) 2022년 ~ 2024년
- (조사노선) 운영 중 23개 노선 중 통행료 과오납에 대해 별도로 데이터를 관리 중인 8개 노선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인천공항, 용인서울, 인천김포, 천안논산, 수원광명, 서수원평택, 화성광주, 인천대교

□ 조사 결과

- (발생사유) 미납통행료 착오납(73.8%),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7.3%), 할인/감면 미적용(7.1%), TCS 과잉수납(2.8%), 기타(9%) 등

구분	발생비율(2022~2024)		비고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미납통행료 과잉, 착오납	62.2%	73.8%	집계 가능한 8개 노선 평균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	15.7%	7.3%	
할인/감면 미적용	2.7%	7.1%	
TCS 과잉수납	7.0%	2.8%	
기타	12.5%	9.0%	
계	100%	100%	

- (과오납 규모) 전체 교통량 중 과오납 건은 평균 약 0.02% 수준이며,
이 중 환불로 이어지는 건은 평균 19.1% 수준

구분	과오납 발생비율		과오납 중 환불 비율	
	건수 기준	금액 기준	건수 기준	금액 기준
8개 노선 평균	0.018%	0.06%	19.1%	47.4%

참고2

재정고속도로 과오납 현황

□ 과오납 현황

1) 과오납 통행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발 생		환불완료		환불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69,118	770	236,902	720	88	94
2022년	76,395	192	66,747	180	87	94
2023년	73,184	197	63,914	186	87	94
2024년	54,133	170	48,164	161	89	94
2025년	65,406	211	58,077	193	89	92

2) 환불 고지 절차

D-월	~ D+3월*	D+3월	D+4월	연 1회**
환불발생 ➡	차로 자동환불 ➡	알림(인증)톡 발송 ➡	안내문 발송 ➡	안내문 재발송

* 차로 자동환불률(약 80%) : 동일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영업소 톨게이트 진출 시
내야할 통행료에서 환불받을 통행료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적용

** 5개년 누적 미환불건 대상

3) 고지 후 환불신청현황('26년 1월 발송분)

(단위 : 건, %)

구 분	발 송	신 청	안내효과
알림(인증)톡	291	83	29 %
안내문	284	42	19 %